

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5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고성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9. 10. 08.
- 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19. 10. 17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- 가. 고성군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.
- 나.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동 급식지원 조례 목적(안 제1조)
- 나. 급식지원 대상자 및 방법(안 제2조~제3조)
- 다. 급식지원 안내, 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(안 제4조~제7조)
- 라.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4조)
- 마. 위생·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4항,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1항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합 의

1) 기획감사담당관: 법제심사, 규제심사

2) 복지지원과: 성별영향분석 평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217호

가) 예고기간: : 2019. 9. 9. ~ 2019. 9. 30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본 조례안은 고성군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하고,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시군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 제5항에 시군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

○ 2019. 10. 17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